



Journal of Milk Science and Biotechnology 투고규정

1. 본 학회지는 유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기초 및 응용연구에 관련된 전 분야의 원고를 게재한다.
2.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될 예정이 없는 논문에 한하며, 학회지의 게재는 원고의 저작권이 저자로부터 학회지로 이양되는 것을 저자가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논문은 그 성질에 따라 연구논문(Research Article), 연구단보(Research Note), 속보(Short Communication), 종설논문(Review Article)의 4종류로 구분하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4. 원고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다.
 - 1) 연구논문의 형식은 국문인 경우에는 Abstract,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결과 및 고찰), 요약, 감사의 글, References의 순으로 하고, 영문의 경우에는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Results and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단보는 한정된 사실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리한 논문으로 연구논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3) 속보는 유가공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 혹은 유제품 관련 규정 및 신기술을 신속히 보고할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원고로 규정한다.
 - 4) 종설논문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 혹은 투고에 의하여 게재하며, Abstract(영문초록)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 5) 속보와 종설논문은 제목, 저자, 저자의 소속 등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인용문헌 순으로 하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6)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써야 하며, 반드시 word processor (HWP나 MS word 등)를 이용하여 A4(210×297 mm) 용지에 줄 간격을 180(아래한글 기준)으로 고정하고 상하좌우 여백을 2 cm씩 둔다. 국문원고인 경우 명조체 11 point, 영문원고인 경우 Time New Roman 12 point로 작성한다.
 - 7)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명, 지명, 잡지명 등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학술용어 및 화학 물질명은 가능한 국문으로 표시한다. 국문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 8) 원고 첫 장에는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을 국문과 영문 순으로 표시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장소와 다를 때는 해당연구자 이름 오른쪽 상단 끝에 아라비아 숫자 순서대로 1번부터 윗첨자로 나열 기재하고, 해당인의 소속기관 왼쪽 상단에 역시 같은 숫자를 붙인다.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 매 단어의 첫머리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ung-Sik Yoon, En Joo Shin and Dongkil Kim). 제출된 논문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우측상단에 *를 표시하고,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10단어 이내의 한글 단축제목(running title)을 원고 겉표지 교신저자란 위에 한글논문은 한글로, 영어논문은 영어로 제시한다. 원고 겉표지 제일 하단에 쓰는 교신저자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Corresponding author : Sung-Sik Yoon, Division of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Tel: +82-33-760-2251, Fax: +82-33-763-4323, E-mail: sungsik@yonsei.ac.kr
 - 9) 국문원고 제2면에는 제목 및 영문으로 된 Abstract를 반드시 첨부한다. Abstract는 250단어 이내로 줄 바꿈 없이 계속 쓰되 논문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야 하며, 맨 뒤에는 논문을 대표하는 3~6개의 영문 Keywords를 표기한다. Keywords의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Keywords : lactic acid, *Lactobacillus acidophilus*, casein, yogurt, cheese
 - 10) 본문의 작성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면 6쪽(원고지 40매, 영문 65×25줄, 약 12쪽 분량)을 표준으로 한다. 속보는 인쇄면 2쪽(원고지 약 12매, 영문 65×25줄, 약 4쪽 분량)을 표준으로 하며, 편지형식으로 작성한다.
 - 11) 표(Table)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되(Table 1, 2, ...로 표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며, 독자적 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의 표와 동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Table 끝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1), 2), 3) 으로 붙이고 Table 하단에 역시 같은 숫자를 붙이고 설명한다. 각 Table은 별도의 쪽에 작성한다. 그림은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그 그림과 떨어진 하단에 그림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독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재한다.

- 12) 본문과 문헌 중에서 학명, 미생물명,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본문에서 단어나 문장 다음에 나오는 괄호는 영어논문인 경우에 띄우고, 한글논문인 경우에 붙인다. 한글논문일지라도 영어로 표기하는 Abstract, Table과 Fig.의 제목이나 문장에서의 괄호는 띄어 쓴다.
- 13)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해야하며, 단위와 술어의 약어는 본 한국유가공용어집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일한다.
- 14) 사용된 기기는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순으로 표시한다.
예 : Gas chromatography (14B, Shimadzu, Japan)
- 15) 모든 인용문헌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한다. 영어 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문으로 기입한다. 인용문헌은 아래의 예시에 따라서 작성하며, 언급되지 않은 인용문헌은 Citing Medicine, 2nd ed.(<https://www.ncbi.nlm.nih.gov/books/NBK7256/>)에 따라서 작성한다.
- 16)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안에 표시한다. 아라비아 숫자와 쉼표만 사용하고, 쉼표 뒤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연속되는 세 개 이상의 숫자는 처음과 끝의 숫자 사이에 '-'을 사용한다. (예: [1], [2,3,15], [3-5]) 본문에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을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번호를 이용하나, 인용문헌의 저자를 기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만 사용하고, 가급적 문장 맨 뒤에 인용번호를 표기한다(예: Lee의 연구; Kim & Park의 연구; Kim et al.의 연구; 참고하였다[2]). 저자명은 6인 이하인 경우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쓴 다음에 'et al.'로 정리한다. 참고문헌은 40개 이내로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투고중인 논문, 미발표 자료 및 개인통신의 경우는 문헌으로 인용하지 못한다.
- 17) Reference(인용문헌)의 약어는 "List of Title Word Abbreviations(<https://www.issn.org/services/online-services/access-to-the-ltwa/>)"에 따른다.

인용문헌의 작성 예는 다음과 같다.

<정기발행 전문학술지>

Lee SB, Choi SH, Baek DY. Inhibitio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for rapid detection of *Pseudomonas fluorescens* in raw milk using IgY. *Korean J Food Sci Anim Resour.* 2000;20:231-235.

Moskowitz GJ, Noelck SS. 1987. Enzyme modified cheese technology. *J Dairy Sci.* 70:1761-1769.

Yoo J, Song M, Park W, Oh S, Ham JS, Jeong SG, et al. A comparis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in dairy products made from Jersey and Holstein milk. *Food Sci Anim Resour.* 2019;39:255-265.

Lee MR. Objective measurements of textural and rheological properties of cheese. *J Milk Sci Biotechnol.* Forthcoming 2019. <https://doi.org/10.22424/jmsb.2018.36.2.73>

<서적>

AOAC. Official methods of analysis. 15th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1990. p. 931.

Montville TJ, Kaiser AL. Antimicrobial proteins: classification, nomenclature, diversity, and relationship to bacteriocins. In: Hoover DG, Steenson LR, editors. *Bacteriocins of lactic acid bacteria.* 2nd ed. Vol. 1.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93. pp. 1-22.

<학위논문, 특허, 학술대회 논문>

Lee KW. Studies on the microencapsulation of lactic acid bacteria and their survival [Ph.D.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Morin N, Health M, Volpenheim RA. Low calorie fat containing food compositions. US patent 3,600,186. 1972.

Oh S, Churey JJ, Kim S, Worobo RW.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ntilisterial bacteriocin produced by *Leuconostoc*



sp. W65. In: 87th Annual Meeting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ood Protection; 2000; Atlanta, GA. p. 67.

<온라인 자료>

Author. Title of homepage [Internet]. 1999 [cited 2018 Feb 23]. Available from: <http://www.uni-heidelberg.de/mydata.html>.

5. 원고는 on-line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ejmsb.org>)으로 접수를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학회로 논문 파일을 송부한다.
6.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 소유가 되며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단,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 명암이 뚜렷하지 않은 사진이 포함되는 등 심사, 편집 및 인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reject 할 수 있다.
7. 투고 논문의 접수일은 원고가 on-line 투고시스템 상 등록된 날로 한다.
8.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논문, 단보, 속보, 종설논문의 투고자는 초교 완료시까지 기본 인쇄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1) 인쇄 후 4면이 초과하는 경우
 - 2) 사진판에 아트를 사용하는 경우
 - 3) 영문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칼라 사진판을 사용하는 경우단, 논문 심사료, 기본 인쇄료 및 초과 인쇄료 실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원고의 게재여부는 원고심사 후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도 필요시 논문의 정정, 보완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0. 기타 투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1.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논문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간주한다. 학회는 제출한 원고를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Similarity Check)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① 원저자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논문의 많은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12. 개정된 투고규정은 2019년에 출판되는 37권 제3호부터 시행한다.



단위와 술어 표기 방법 (단위) 표기방법 (단위) 표기방법

(단위)	표기방법	(단위)	표기방법
nanometer	5 nm		0.15 mg%
micrometer	3 μ m		10 ppm
centimeter	4 cm	pound	15 lb
meter	5 m	pressure	750 mm Hg
microliter	7 μ L	pH	pH 5.0
milliliter	2 mL	centipoise	20 cp
liter	20 L	mega pascal	20 MPa
milligram	6 mg	gravity	12,000 g
gram	35 g	count per minute	5 cpm
kilogram	15 kg	revolutions per minute	10 rpm
micromolar	3 μ M	kilo gray	7.0 kGy
millimolar	7 mM	(범위)	2.5-6.5 mg
molarity	1×10^{-2} M	(수식)	0.405
second	20 s		(a+b)/(c+d)
minute	1.5 min	(약어) standard deviation	SD
hour	4.5 hr	standard error	SE
day	5 d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
week	2 wk	optical density	OD
month	2 mon	relative humidity	RH
volt	12 V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velocity	50 mm/min	water activity	a_w
	35 m/sec	deoxyribonucleic acid	DNA
temperature	45 $^{\circ}$ C	ribonucleic acid	RNA
colony count	9×10^3 CFU/g	immunoglobulin	Ig
significant at	$p < 0.05$		CIE L
percent	35%		CIE a
conc.	30%(w/v)		CIE b



Journal of Milk Science and Biotechnology 논문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규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3.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5.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6.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7. 심사결과는 채택 가, 수정 후가, 불가 및 기타(수정 후 재심사)의 4종으로 나눈다.
8. 심사위원은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인정한다.
 - 1) 오리지널리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 2) 원고줄기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3)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아이디어가 뚜렷하지 않거나 미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4) 기타 제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심사위원은 원고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는 수정 후 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해당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이의 또는 보충을 요구한다. 단 저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처리한다.
 - 1) 저자가 한 일과 남이 한 일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
 - 2)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3) 그림 및 표에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
 - 4) 외국문으로서 표현이 부적당한 부분
 - 5) 기타 투고규정에 어긋난 부분
11. 외국어로 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치 않거나 문법상 해독이 곤란한 것은 채택보류를 하고 국문으로 재 투고할 것을 저자에게 전할 수 있다.
12.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은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3.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1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해야 한다.
14. 심사위원이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재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회로 반송해야 한다.



한국유가공학회 포상기준

(2005년도 10월 개정)

1. 학술상 세부 규정

- 1)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
- 2) 과거 5년간 연구논문 발표 실적
- 3) 심사대상논문은 유가공기술과학 분야에 한함
- 4) 논문 게재 점수
 - 한국유가공학회지 게재 논문 1점
 - 기타 논문 게재 0.5점
- 5) 피추천자 중 최다득점자를 선정 점수가 유사할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복수수상자를 결정

2. 기술상 세부 규정

- 1)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추천
- 2) 과거 5년간 기술 및 제품 개발 실적
- 3) 유가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기술에 한함
- 4) 특허 등록 점수
 - 국제특허 등록 1점
 -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특허 등록 0.5점
 - 국내특허 출원 0.2점
 - 출원 혹은 등록된 특허의 국내외 기술이전 및 산업화 1~4점
 - 특허를 득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 2점
- 5) 피추천자(단체) 중 최다득점자(단체)를 선정, 점수가 유사할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복수수상자(단체)를 결정

업적평가기준표 참조

저자수	역할	점수 적용율(%)
단독	-	100
2인	제1저자(연락저자)	70
	공동	50
3인	제1저자(연락저자)	60
	공동	40
4인	제1저자(연락저자)	50
	공동	30
5인 이상	제1저자(연락저자)	40
	공동	20

3. 포상위원회 세부규정

- 1) 포상위원회는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상무이사 및 편집위원장 5인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다른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수상후보자는 포상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위임을 포함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Journal of Milk Science and Biotechnology 연구윤리 규정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연구 시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 연구윤리규정

제1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 ① Journal of Milk Science and Biotechnology는 ICMJE, 2017(<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의 저자됨에 대한 권고를 따른다.
- ② 각 저자는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 ③ 저자는 수행한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저자는 어느 공저자가 연구의 어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자는 공저자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연구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저자로 기록된 모든 연구자는 위에 기술된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기록한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연구자는 기여자로 기록한다.
- ⑤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교신저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신저자는 편집인과 구독자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

제3조 (잠재적 이해관계)

- ① 교신저자는 자료의 연구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이해관계가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관계는 반드시 논문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재정적 지원, 개인적인 친분,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압력, 또는 학문적인 문제들을 전부 포함할 수 있다.
- ③ 잠재적인 이해관계 공개 양식은 ICMJE 공개 양식(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과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편집인은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논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결정할 것이다. 특히, 연구를 위한 모든 자급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④ 이해관계는 연구과정에서도 연구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 이해관계를 공개를 할 경우, 편집인, 심사자, 독자는 완성된 연구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한 후 원고에 접근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대상의 선택과 서술)

- ①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 또는 건강한 개체)의 선택 또는 배제기준을 포함한 선정방법과 대상군의 특성을 명확히 기술한다.
- ② 실험설계 단계에선 나이, 성별, 종족 등의 변수가 적절한 지가 항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대표성을 가진 대상이 연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소한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적절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제시해야 한다.
- ③ 만약 연구 대상이 한 가지 성별만으로 구성된 경우처럼 배타적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전립선암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자들은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5조 (피험자와 실험동물의 권리)

- ① 인간 대상연구는 'Helsinki Declaration (<http://www.wma.net>)'에 따라야 한다. 동물 연구는 국가나 기관에서 정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물 연구는 농림수산업역검사본부훈령 '동물실험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본 학회지는 적절한 승인이 없는 인간/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기관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면제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조사에 참여한 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환자의 이름, 약칭,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보호받는 의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 ③ IRB 및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인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승인 여부를 밝히고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절 편집자 연구윤리규정

제7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9조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15조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6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7조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2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전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전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21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형태로 통보한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본 조사)

-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판정)

- ①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본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조사결과와 보고)

- ① 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6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② 학회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④ 처리내용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희망할 경우에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부 칙

- ①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2014년 01월 제정)

(2016년 01월 개정)

(2017년 12월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유기공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Milk Science & Biotechnology」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사)한국유기공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자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자는 Journal of Milk Science & Biotechnology의 투고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은 Journal of Milk Science & Biotechnology의 출판과 기타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사)한국유기공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조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후임 편집위원장은 잔여일을 포함하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 ②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편집자와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자와 편집위원이 동시에 1/2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전체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 혹은 기관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 ④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사)한국유기공학회의 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자와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심사분야에 따라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편집위원장 혹은 공동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학술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 ② 편집자 및 편집위원의 추천
-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 ⑤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사)한국유기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의 각 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1.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
 -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인
 - 3.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4.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사)한국유기공학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실험데이터 등)를 요청 할 수 있다.
4. 영문 및 기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문도 편집위원회 규정 5조 제 1항에 따라 심의 및 결정 한다.
5. 기타 학술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사항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ELF-CHECKLIST

All manuscripts must be submitted online at <http://www.ejmsb.org>

When submitting your manuscript, please review the following items and indicate which items are applicable using "√" on "□."

▶ Format

- Have you checked the journal's website for instructions to authors regarding specific formatting requirements for submission?
- Is the entire manuscript, including abstract, keywords, methods, results, discussion, conclusion, references, table and figure?

▶ Title Page and Abstract

- Does the title page include the article title, affiliations,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 Does the abstract less than 250 words?
- Are the key words range between 3 and 6?

▶ References

- Are references cited both in text and in the reference list?
- Are inclusive page numbers for all articles or chapters in books provided in the reference list?

▶ Tables and Figures

- Has the figure been prepared at a resolution sufficient to produce a high-quality image?
- Are titles and footnotes of tables and figures written in English?

Corresponding author

Print name

Date

Signed

<http://www.ejmsb.org/>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Manuscript title

Corresponding author
name

Fax

Email

The authors of the article hereby agree that the Korea Society of Milk & Biotechnology holds the copyright on all submitted materials and the right to publish, transmit, sell, and distribute them in the journal or other media.

Corresponding author

Print name

Date

Signed

Co-authors

Print name

Signed

Date

Print name

Signed

Date

Print name

Signed

Date

Print name

Signed

Date

